

어선원 복어독 사망사건, 수협측의 3번의 거부에도 어선원재해 인정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발신

법무법인 마중
기획지원실

“어선 승선 중 선원의 복어 독 섭취, 산재가 될까요?”

1. 사건의 배경

2022년 가을 초, 한 어선 위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조리사로 일하던 A씨가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한 뒤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복어 독으로 알려진 '테트로도톡신' 중독이었습니다. 선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사고 전날 어선의 취사장에서 복어를 손질해 그릇에 담아 두었고, 다음 날 이를 섭취한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유가족은, A씨가 조리사로서 복어요리를 준비하며 시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해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는 A씨가 복어조리기능사 자격 없이, 개인적인 식재료로 조리한 것이므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우며, 개인의 과실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세 차례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유가족은 법률대리인(법무법인 마중)을 선임해, 행정소송을 통해 이 사건을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2. 법무법인 마중의 변론 및 결과

이 사건에서 A씨의 직업이 선원이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선원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법 제 27조 (유족급여)

② 중앙회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그 어선원 등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www.majunglaw.kr

이메일
majunglaw@naver.com

전화
02-3143-1158

하지만 이미 세 차례 불승인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각 쟁점에 대한 법적 논리를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1 복어 독 섭취가 고인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A씨가 복어 독을 섭취한 것이 재해 보상을 받지 못할 만큼 고인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을 무시하고, 거의 고의에 가까운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수협에서 처음에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린 이유는, 고인이 복어조리기능사 자격 없이 제대로 손질되지 않은 복어를 섭취했다는 점에서 이를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마중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비록 고인이 조리되지 않은 복어를 섭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고의적으로 행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망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중은 고인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의 본질적인 취지를 해칠 정도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2 이 처분을 수협의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가?

어선원재해보험법은 어선원이라는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재해와 직무 간의 명확한 관련성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그 원인에 대해 직무와의 관련성을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선원법은 보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8.30 선고 2018두43774 판결 중 일부

(4)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1항은 '직무상 사망한 경우',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유족급여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략) 사회보장급여의 하나인 재해보상보험급여의 기준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는 재해보상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 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에 의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라는 점에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 직무 외 원인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여부 및 그 범위의 결정은 입법자에게 폭넓게 허용되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한다.



www.majunglaw.kr

이메일
majunglaw@naver.com

전화
02-3143-1158

이러한 선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무법인 마중은 수협이 내린 불승인 처분이 법적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협이 고인의 중대한 과실만을 이유로 직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수협이 고인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곧바로 불승인을 내리고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복어 독 중독의 경우 모든 경우에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응급처치만 이뤄졌다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원의 특성상 승선 후 몇 달 동안 육지로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고인은 불가피하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고인의 사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실로,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해당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며, 수협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에게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하여 재량이 있는 경우 이를 적절히 행사하여 지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재량권의 행사 없이 만연히 부지급 처분을 한다면 이 역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3. 이 사건의 의미

복어를 시식한 것이 고인의 과실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여러 다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과실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선원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따르긴 하지만, 선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에 맞춰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어, 일반적인 산재법과는 다소 결이 다릅니다. 고인이 처한 작업 환경과 의료적 제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법원은, 과실이 있었다라도 이를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할 만큼 중요한 사유로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번의 불승인 처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아 정당한 보상을 받아낸 사건으로, 이 사건은 법적으로 크게 의의가 있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협에서는 해당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마중**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특화된 로펌으로, 신청부터 소송, 합의, 유관 법률 자문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각 사건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관련 문의를 언제든지 법무법인 마중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www.majunglaw.kr

이메일
majunglaw@naver.com

전화
02-3143-1158

관련 구성원

김용준

대표변호사

yrince@majunglaw.kr

* 법무법인 마중 레터는 일반적인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마중의 공식적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 광화문 | 대전 | 부산 | 대구 | 광주



www.majunglaw.kr

이메일

majunglaw@naver.com

전화

02-3143-1158